주주 여러분께

신주 발행 및 명의개서정지 공고

2017년 09월 06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8,130,100주 (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기타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한다. 이하 모든 경우에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1)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9월 25일, 예정)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 이하 동일함),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7%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7%의 할인율을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

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7년 09월 25일(예정)

6.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7년 9월 26일 ~ 2017년 10월 10일(예정)

7.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 전체 발행 예정 신주의 20%인 1,626,020주는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한다.

(2) 구주주 :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구주주(이하 “구주주”)에게 구주주 소유 주식 1주당 0.39115540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만큼 배정한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3)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이후 실권주가 발행하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에게 초과청약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다만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함).
  가.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나.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다.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4) 최종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한다.

8. 신주의 청약기간
(1) 우리사주조합 청약 : 2017년 11월 06일 (1일간)
(2) 구주주 청약 : 2017년 11월 06일 ~ 2017년 11월 07일 (2일간)

9. 납입기일 : 2017년 11월 09일(예정)

10. 납입처 : 신한은행 역삼동기업금융센터

11. 배당기산일 : 2017년 01월 01일

12. 청약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청약 : 신한금융투자㈜의 본·지점
(2) 구주주 청약
  -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신한금융투자㈜의 본·지점

- 명부주주 : 신한금융투자㈜의 본·지점

1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에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를 위탁하기로 한다.

(2)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될 예정이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7년 10월 20일 ~ 2017년 10월 26일 (예정)

(4)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 상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한다.

14.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17년 11월 21일

- 단, 유관기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5. 신주권 상장예정일 : 2017년 11월 22일

16. 주권교부처 : 명의개서대행기관(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17.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하다.

(4)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5) 기타 본 건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에서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한다.

끝.